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규정

2013. 11. 29. 제정

2014. 11. 28. 개정

2015. 2. 27.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법학연구소”라고 한다)에서 수여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이하 “논문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논문상은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법학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취지로 한다.

제3조 (시상대상 및 수상자격)

- ① 논문상은 해당연도에 발간된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된 논문(관례평석 포함) 중에서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 또는 부교수 이하인 투고자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015. 2. 27. 개정>
- ② 공동저자인 경우 공동수상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저자 모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4. 11. 28 개정>
- ③ 이미 논문상을 받은 자는 해당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2015. 2. 27. 개정>

제4조 (수상인원)

논문상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논문 투고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선정된 논문 1편에 대하여 매년 1회 시상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 ① 수상논문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학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법학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고 한다)에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2. 법학연구소 간행부장(편집부위원장)
 3. 법학연구소 연구부장
 4.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
- ③ 편집위원장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유고일 때에는 간행부장(편집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2항 제4호에 의한 심사위원의 추천 및 위촉은 해당 연도 12월까지로 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공자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매년 수상논문을 정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시상논문 추천)

본교 전임교원(또는 편집위원회 외부 편집위원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년도 수상논문을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수상논문 결정)

- ① 위원회는 수상대상논문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법학지 제4호를 발간한 후에 소집한다. <2015. 2. 27. 개정>
- ② 위원회는 제6조의 추천받은 논문 중에서 수상대상 논문을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수상대상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창의성과 적실성, 연구관점의 참신성 및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수상논문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수상대상 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의사와 심사경과는 비밀로 하며 결정내용을 미리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장은 시상 결정의 결과를 지체 없이 법학연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자 발표)

법학연구소장은 수상논문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수상자에게 수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법학지 제1호에 수상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015. 2. 27. 개정>

제9조 (시상 및 부상)

- ① 시상과 관련된 내역은 차년도 3월에 발행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에 공지한다.
- ②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제10조 (시상의 취소)

편집위원회는 수상논문에 대해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

제11조 (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경과규정)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논문상은 2014년 제4호 및 2015년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